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65,106,442 | 19,953,193 |
| 일반회계 | 620,491,205 | 18,614,736 |
| 특별회계 | 44,615,237 | 1,338,457 |
| 기타특별회계 | 44,615,237 | 1,338,457 |
| 상수도사업 | 2,841,904 | 85,257 |
| 하수도사업 | 3,329,701 | 99,891 |
| 수질개선 | 9,788,894 | 293,667 |
|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| 402,200 | 12,066 |
| 의료급여기금 | 744,822 | 22,345 |
| 소득특화사업 | 6,000,000 | 180,000 |
| 농공단지조성사업 | 2,008,597 | 60,258 |
| 공영개발사업 | 1,133,040 | 33,991 |
|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| 80,124 | 2,404 |
| 행복주택사업 | 5,248,250 | 157,448 |
| 청사건립사업 | 13,037,705 | 391,131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,013,94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